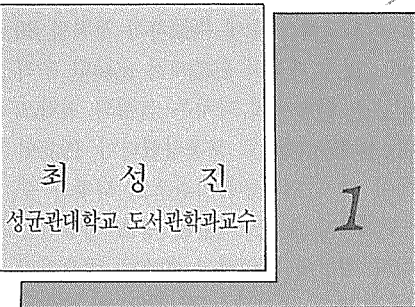


전국도서관인근모임

정책토론



어떤 調査結果에 근거하여 하는 말은 아니지만, 皮相의觀察로부터 받는 印象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발전이 더디고 봉사내용이 貧弱한 館種은 아마 公共圖書館과 學校圖書館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公共圖書館이 그동안 대학도서관이나 專門圖書館이 이룬 것과 같은 발전을 이루지 못한 것은 최근의 우리 歷史 속에 6·25와 같은 不幸한 時期가 있었고, 도서관이라고 하는 기관이 性格上 짧은 期間에 急成長할 수 없다는 不可避한 事情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정은 실상 도서관 內部的 잘못이나 태만으로 생겼던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公共圖書館 발전의 지체에 內部的 責任, 즉 司書들의 責任은 전혀 없었는가?

제 견해로는 司書들에게도 責任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것은 公共圖書館이 그동안 急變하는 地域社會의 환경에 적절히 適應하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즉 공공도서관이 그것이 속한 地域社會의 요구를 잘 반영하고, 이용자들의 변화된 情報接近 習慣에 맞는 새로운 봉사프로그램을 계속적으로 開發하여 운영하려는 意慾이 적었고, 革新에 소극적이었으며, 오랜 관습과 규정의 틀 속에 안주하여 온 것입니다.

1963년에 制定公布된 도서관법 속에 明示된 공공도서관의 目的, 즉 도서관의 자료를 수집, 정리, 보존하여 公衆의 교양과 조사, 연구, 레크리에이션에 제공한다는 目的이 1987년에 改正된 도서관법에도 대강 그대로 옮겨지고 今年 2월에 제정 공포된 도서관진흥법에서야 公衆의 정보이용, 文化活動 및 平生教育을 增進함을 주된 目的으로 하여 바뀌었다고 하는 것이 그 한 증거입니다.

이 修正없이 存續된 目的으로 말미암아 지난 30年間, 즉 한 世代에 걸쳐 모든 공공도서관 活動은 그 目的을 成就하기 위하여 계획되고, 실행되고, 평가 되도록 法的으로 강요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30年 동안에 地域社會는 대부분의 構成員이 國民學校 졸업수준에서 高等學校 졸업수준으로 學力이 높아졌고, GNP가 미화 80불에서 5,500불로 늘어났고, 住居환경이 현저하게 改善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이 변화된 환경에 변함없이 지속된 공공도서관의 낡은 프로그램이 결코 調和를 이루지 못하였을 것이고 발전을 이루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한 世代나 존속된 공공도서관의 그 法定目的은 1940年代에 미국 도서관협회가 제시한 공공도서관의 목적과 大同小異한 것으로 보아 미국 공공도서관의 목적을 거의 그대로 수입 이식한 것이며, 우리 社會의 전통적 價値와 方式, 時代的 必要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에 근거하여 설정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빌려온 목적을 개정하려는 활발한 논의가 지난 30년간 공공도서관 內부에 있었다는 말을, 제가 과문한 탓인지, 듣지 못하였습니다.

공공도서관 봉사의 內容과 形態는 주로 두가지 要因에 의하여 決定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첫째, 지역사회가 그 도서관에 대하여 期待하는 要求 및 社會가 變化함으로 일어나는 要求의 變化, 둘째, 공공도서관 지도자들이 設定하는 목적입니다.

지역사회의 요구와 공공도서관의 목적이 언제나 一致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극단적인 경우 兩者가 서로 모순되는 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때에는 물론 사회의 요구가 도서관이 정한 목적보다 우위를 차지합니다.

왜냐하면 공공도서관을 포함하여 사회의 모든 기관은 당초 사회의 어떤 要求를 充足 시키거나 어떤 새로 제기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설립되며, 그런 목적이 성취되거나, 성취능력이 없을 때에 그것은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지역사회는 自己要求를 外面한 도서관의 존속을 바라지 않습니다.

이것은 民主社會에서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支援을 거부하는 행동으로 표시되고, 결국 도서관은 지역사회의 망각 속에 묻혀 쇠퇴현상을 계속하다가 마침내 완전히 활동을 정지하게 될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도서관은 그 오랜 역사를 통하여 사회적 요구에 비교적 잘 부응하면서 문헌을 통한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는 獨步的인 기관으로 安定된 專門的活動을 維持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한 세기동안 도서관은 社會의 增大되는 정보요구 추세에 適切하게 부응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自體의 뚜렷한 指導的 理念이나 理論을 세우지 못한 가운데 방향함으로써 앞에서 지적한 쇠퇴의 길을 自招하고 있는 듯한 징후를 보인 것입니다.

즉 특수도서관, 도큐멘테이션, 情報學 등의 分列이 있음으로써 도서관의 社會的 位相이 다소 훼손되고, 또 중요성이 減少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도서관 영역에 유사한 기능을 가진 새로운 기관들의 발생을 방관하고 더우기, 일부 도서관인들은 그것을 분열의 개념 또는 도전적 개념으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不幸을 심본 참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도서관이란 人間經驗의 記錄을 수집, 보존, 이용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古今에 一貫된 도서관의 中心概念이라고 생각합니다. 情報나 知識을 기록한

文獻은 時代的 要求의 變化에 따라 그 종류나 형태가 변하게 마련이며 수집, 정리, 보존, 이용방법과 技術은 그 변화에 따라 또한 달라져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용자들의 새로운 기호, 관심, 요구가 나타나면 도서관은 새로운 프로그램과 技術로 對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새로운 방법이 낡은 것들을 代替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여야 합니다. 그것이 이른바 발전이라 부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李春熙 會長께서 개회사 중에 指摘하신 것처럼 80년 전에 愛國的, 민족 계몽적 動機에서 出發한 우리나라 近代圖書館은 數年後에 닥쳐온 日帝의 침략으로 36년간 植民地 統治機構로 동용당했다가 1945년 8·15해방후에야 다시 민족문화기관으로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近代도서관은 당초 점증하는 外國勢力의 침략 위협에 對值하고 獨立을 保全하기 위하여 無知한 國民을 깨워야 하는 절실한 시대적 요구에 입각하여 設立되었으므로 크게 成功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日帝下 도서관의 殘存, 8·15해방에서 6·25까지의 사회적 혼란, 戰爭3年間の 파괴, 戰後의 고난에 찬 生活, 1960년대 이후의 産業化와 경제발전의 熱氣 속에서 공공도서관은 뚜렷한 목표조차 세울 수 없었습니다. 目標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社會의 要求와 直結되지 않고, 分明하지 않았기 때문에 도서관봉사에 生氣가 없고, 지역사회와의 환영과 支持도 있을리 없었습니다. 사실, 지난 수십년간은, 공공도서관이 어디에 목표를 두어야 옳을지 생각할 여유조차 없었던 激動期였습니다.

그런 狀況에서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은 社會의 期待와는 상관 없는 곳에서 홀로 애쓰며 이른 바 쇠퇴의 길을 걸어 왔습니다. 현총장께서 하신 말씀을 빌리면 공공도서관은 그동안 「一般市民生活에서 소의된 시설이었습니다.」

公共圖書館이 쇠퇴과정에서 돌이켜 당초의 生氣와 成功을 회복하려면 우리 지역사회와의 현대적 요구를 바르게 파악하고 목적과 기능을 再檢討하여, 그것에 맞춘 다음 그 우선순위의 比重을 再調整하여 지역사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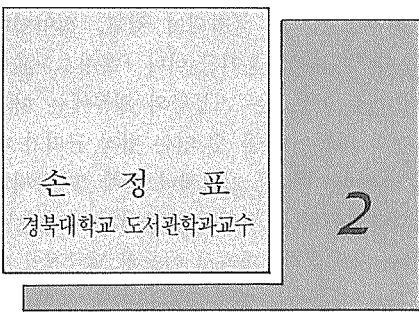
회와 時代의 要求에 確實히 기초한 도서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역사회의 요구와 이용자들의 자료이용습관을 조사하는 일은 물론 쉽지 않습니다. 또 그런 요구와 습관을 어느 時點에서 正確히 조사하였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흐르면 그것이 변화하므로 調查活動은 계속적으로 수행하여야 합니다. 그것이 어렵다고하여 실행하지 않아도 되는 理由가 될 수 없습니다.

公共圖書館의 現行奉仕 프로그램에 단지 더 많은 돈을 들여 장서를 늘리고, 시설을 확대·개선하고, 司書數를 늘리는 것만으로 당장 地域社會의 熱烈한 歡迎을 불러일으키고 봉사가 活潑하게 이용될 것이라고 믿는다면 아마 너무 순진한 期待일 것입니다.

要컨대, 공공도서관의 발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要素는 변화된 地域社會의 환경과 이용자들의 이용습관을 계속적으로 조사하여 그에 맞는 봉사프로그램을 개발 운용하려는 사서들의 意慾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봉사프로그램을 아마 韓國的 公共도서관봉사라고 불려도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개발하는 일은 우리 모든 圖書館人, 特히 공공도서관인의 時急한 課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은 오늘 '도서관은 문화의 뿌리'라는 표어를 내걸고 한자리에 모였다. 제6차 경제사회발전5개년 계획이 추진되면서부터 본격화 된 두뇌집약산업의 육성과 더불어 서기 2000년대에 도래하게 될 정보화 사회로의 진입을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국가정보원에

로서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도서관이라는 뿌리가 튼튼하게 뻗어내리도록 잘 가꾸어 나가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문화의 뿌리가 튼튼하게 내리느냐 못내리느냐의 관건은 곧 정부 당국에서 수립하게 될 도서관정책 여하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정책이란 목적이나 목표에 대한 확립된 의도를 나타내는 행동지침인 것이다. 따라서 이는 포괄성, 일관성, 융통성, 실현가능성을 지니고 있지 않으면 안 되므로 정책수립의 과정에는 무엇보다도 먼저 목적에 대한 명확한 분석과 더불어 이의 실행을 위한 정부당국의 확고한 의지와 충분한 재정지원 및 이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관계법규의 정립 등과 같은 제도적 보완의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판단이 선행되지 않으면 안된다. 그것은 만일 그들의 뒷받침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도서관정책이란 한낱 걸치레만의 화려한 정책제시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일관성 있는 추진도 기대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한 관점에서 시간제약상 공공도서관의 정책수립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중의 하나인 재정지원 관련 법규만을 중심으로 의견 몇가지를 제시하여 보기로 하겠다.

공공도서관의 발전은 한 나라의 문화지표의 척도를 대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만큼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공공도서관이 현재의 공부방 역할에서 벗어나 그 본래의 목적인 자료정보의 목적, 교육의 목적, 문화의 목적, 여가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여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생동하는 도서관, 지역사회 지식 및 문화활동 중심기관이요 국민독서생활화 추진기관으로서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명실상부한 도서관이 되기 위하여는 적어도 다음과 같은 수준이 될 수 있도록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공공도서관육성정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① 도서관수는 1관당인구 30,000명, 대도시는 1관당 88,000명 수준이 될 수 있도록 시·구·읍·면단위 총 1,848개관과 이동도서관 234대 이상을 설치하여야 할 것이다.

② 시설은 인구 1인당 건물면적을 기준인구에 따

라 적어도 외국의 1/2~1/3수준인 0.016~0.023 m², 좌석수는 인구 1천명당 2.8~4석, 자료는 외국의 1/3~1/4수준인 인구 1인당 기본 0.5권, 연중가 10%, 자료구입비는 운영비의 6.8%인 현수준에서 20% 수준으로 끌어올리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③ 직원수는 현재 사서직원 1인당 인구 46,900명에서 10,000~22,000명, 전체직원 1인당 15,000명에서 외국의 1/2~1/3수준인 5,000~7,000명 수준으로 낮추고, 사서직원 : 비사서직원도 현재의 1 : 2.1에서 3 : 2의 수준으로 끌어 올리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④ 도서관봉사는 현재 관내봉사 위주로 되어 있는 소극적인 봉사구조체제를 관외대출, 우편대출, 장애인을 위한 관내외봉사 및 방문봉사, 기탁소·배본소·이동도서관·대출문고 등을 설치 운영하는 한편, 도서관 프로그램 운영도 독서관계 일변도에서 벗어나 보다 다양한 사회교육 및 문화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평생교육의 장과 지역사회 문화활동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봉사구조체제로 전환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상기와 같은 수준이 되도록 공공도서관육성정책이 마련되려면 전술한 바와 같이 무엇보다도 정부 당국의 확고한 의지와 과감한 재정적 뒷받침이 없어서는 안될 것이며, 그러한 뒷받침이 이루어지기 위하여는 먼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관련법규들을 개선해 나가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첫째, 현재 지방자치단체들의 경제적인 자립도나 기초 의회 출범과 더불어 붓물처럼 쏟아져 나오는 지역숙원사업들을 볼때 현상태하에서는 훌륭한 육성정책이 수립된다 하더라도 그 실현을 위한 과감한 재정지원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기대하기란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정부 당국이 문화정책적 차원에서 공공도서관을 육성할 의지가 있다면 그 설립 및 운영을 위한 국고 지원이 절실히 요망된다는 점을 인지하고, 범 국가적차원에서 관계부처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지방재정법의 「지방자치단체경비부담의 기준등에 관한 규칙」에 명시된 사업범위에 「공립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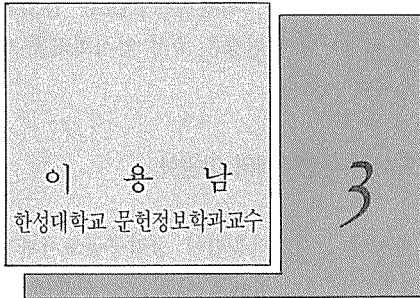
공도서관 지원」을 항목으로 설정하고 그 기준율과 부담율을 명백히 하여 지금과 같이 정치적 흥정에 의한 재정지원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대도시의 경우는 시·구의 단일도서관만으로는 지역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가 없기 때문에 분관시스템 형태로 운영되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그러한 체제를 갖추기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부지나 건물확보가 시급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대단위 아파트단지 설립시나 도시재개발시에는 분관설치를 위한 일정규모이상의 부지 또는 건물내 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그에 필요한 의무규정을 「주택건설촉진법」과 「도시재개발법」에 명문화 하도록함과 더불어,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88조에 명시된 바와같이 지역의 인구밀도에 따라 2km~4km 간격으로 분관들이 설립될 수 있도록 부지 또는 건물확보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공공도서관정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전실한 정책이 되려면 상기와 같은 조치들과 더불어 「도서관진흥법」에 명시된 도서관진흥기금의 확보가 조속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된다 하겠다.

그러나 문화부측의 노력으로 지난 2월 28일에 개정 공포된 「법인세법시행규칙」을 보면 세제혜택의 범위가 「비영리법인이 설립한 도서관으로서 도서관진흥법에 의하여 등록된 도서관의 시설비·운영비로 지출하는 기부금」만으로 국한되어 있고, 법인이나 단체, 개인이 「도서관진흥기금」이나 「특정도서관의 시설·운영비」로 기부하는 기부금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세제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고 있어 사실상 기업체나 단체 및 독지가들의 도서관진흥을 위한 적극적인 참여가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다 하겠다. 따라서 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는 기부금등에 관한 소득계산 특례규정인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에 「도서관진흥기금」과 「도서관시설 및 운영비에 지출하는 기부금」도 삼입시켜 공히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거나, 이것이 어렵다면 법인체만이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인세법시행규칙」에 이의 범위를 확대시켜 「체육진흥기금에 출연하는 기부금」처럼 「도서

관진흥법에 의한 도서관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기부금과 다른 도서관에 시설·운영비로 기부하는 기부금도 이에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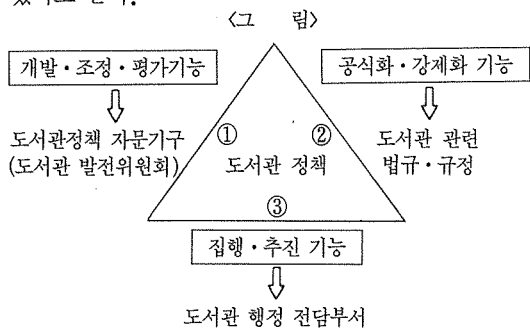
현승중 총장과 정필모 교수의 주제발표 내용에 대부분 공감하고 있으며, 특별히 강조해야만 될 중요한 문제 두가지만 언급하겠다.

1. 도서관정책 기반구축을 위한 기본구조

도서관정책의 문화부 이관을 계기로 정부에서는 장관을 비롯한 관계자 모두가 상당한 의욕을 보이고 있으나, 이러한 관심이 일과성이지 않고, 효율적인 정책의 개발 및 추진을 지속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제도적 장치가 확고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즉, 「정책의 내용」을 논하기에 앞서 더욱 중요한 일은 앞으로 좋은 내용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정책의 기반」구축을 위한 기본구조는 어떠한가 하는가부터 생각해 보아야 한다.

본인은 도서관정책의 기반구축을 위한 기본구조를 아래 그림과 같은 삼각형의 「삼면구조」로 표시할 수 있다고 본다.



제1면은, 도서관정책을 개발하고, 이를 수많은 관련기관과 조정하며, 그 시행결과를 평가하는 기능의 구조로서, 「도서관정책 자문기구」가 그 기능을 담당할 수 있다.

제2면은, 개발된 도서관정책이 공식화되고 강제화되는 기능의 구조로서, 각종 「도서관관련 법규와 규정」이 그 기능을 담당하는 셈이다.

제3면은, 도서관정책을 집행하고 추진하는 기능의 구조로서, 「도서관행정 전담부서」가 그 기능을 담당해야 한다.

세계 14개국의 도서관법을 비교·분석하여, 모든 국가의 도서관법 입법에 적용시켜야 될 22개 조항의 원칙을 제시한 F. Gardner의 연구보고서(UNESCO)에서도 최우선 원칙으로 「도서관정책 자문기구」와 「도서관행정 전담부서」의 설치를 내세워, 「도서관법」과의 상호 연계를 제시하므로써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를 인체와 비유한다면, 정책자문기구는 「머리」에, 관련법규는 「몸」에, 그리고 행정전담부서는 「팔다리」에 비유할 수 있을 것이다.

이중에서 「관련법규」나 「행정전담부서」의 중요성은 도서관계에서 상당히 언급되어왔다. 물론 관련법규 문제만 하더라도 이제 겨우 「도서관진흥법」과 「시행령」이 제정되었을 뿐, 「공무원임용령」 「지방공무원임용령」(사서직급) 「대학설치기준령」(대학도서관 시설·자료기준), 「학교시설·설비 기준령」(학교도서관 시설·자료기준), 「교육법시행령」(사서교사 직급구분)등 당장 시급히 해결해야 될 관련법규가 10여개가 넘지만, 이에 대한 관심과 추진 의욕은 어느 때보다도 높다고 보여진다. 또한 도서관행정 전담부서에 관한 문제로 그간 도서관계에서 오랫동안 요청해왔던 국(局)단위의 수준까지는 모르지만, 과(課)단위는 신설키로 약속이 되어있는 줄 알고 있다.

그런데 도서관정책의 3면구조 중 가장 중요한 요소이면서도 흔히 간과하기 쉽거나 형식화되어버리기 쉬운 것이 「도서관정책 자문기구」이다.

도서관정책 자문기구는 국가단위의 도서관정책을 개발하고 조언하며, 도서관정보협력망을 비롯한 문헌정보 활동에 관련된 각급 부처 및 기관의 활동을

조정하여 총체적 계획을 수립하며, 도서관 관련 법규의 시행상황을 지속적으로 평가·분석하며 미비점을 보완·개정토록 건의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우리의 도서관진흥법에서는 관련부처의 당연직 위원과 도서관계 인사들을 중심으로 구성하여 문화부장관을 자문토록 되어있는 「도서관발전위원회」가 바로 이러한 기구이다. 만약 이 위원회가 위와 같은 본연의 기능을 명실상부하게 수행하지 못한다면 정부의 도서관육성 의지에 대한 성과는 일과성일 수밖에 없으며 지속적이며 효율적인 도서관정책 개발과 추진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현재 정부산하에는 수백개의 각종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줄 알고 있는데 그 대부분이 유명무실하거나, 1년에 한두번 형식적으로 개최되어 의사결정 합리화의 수단으로 운용되는 사례가 많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도서관발전위원회」 또한 여타 위원회처럼 형식적인 존재로 변질될 위험성은 항상 가능하기때문에 도서관계에서는 이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만 한다.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는 사례로 꼽히고 있는 도서관정책자문기구는 미국의 경우이다. 1970년 특별법(美公法91-345)에 의해 설치된 「전국 도서관 및 정보학위원회」(NCLIS)란 이름의 이 기구는, 대통령이 위원을 임명하는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설립되어, 국가의 문헌정보 봉사계획 수립을 위한 절대적인 권한이 위임되어 있고, 기능수행상 필요한 전문가 및 직원을 위원회에서 채용할 수 있으며, 활동에 필요한 예산액을 법률에 명시하는 등 강력한 자문기구로서의 효용성을 높이고 있다.

이러한 수준까지는 미치지 못하더라도 우리나라의 「도서관발전위원회」가 유명무실한 형식적 기구로서 전락되지 않기 위해서는 최소한 다음과 같은 사항을 하위규정에 명문화하여 철저히 시행하여야겠다.

첫째로, 연간 최저의 개최횟수를 정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둘째로, 지속적이며 심층적인 현안연구를 위해 동위원회 산하에 「전문분과위원회」를 상설기구로 두어 활용해야 한다.

셋째로, 일정기간의 회기동안에 산출된 정책개발 및 건의사항 등은 그 시행결과와 함께 「보고서」로 간행되어 관련기관에 공지되어야 한다.

넷째로, 동 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에 필요한 예산 및 실무 사무직원에 대한 배려가 마련되어야 한다.

다섯째로, 필요한 경우, 위원과반수(또는 1/3)의 동의를 얻어 요청하면 위원장은 즉시 임시회의를 개최토록 제도화해야 한다.

2. 공공도서관 운영체제의 이원화

새로이 제정된 도서관진흥법이 공립공공도서관장의 사서직보임 의무화, 입관료 폐지 등, 그동안 도서관계의 숙원사항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였음은 매우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법 제22조 제1항의 조항은 공공도서관의 이원적 운영체제를 고착화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도서관계에 적잖은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87년도에 개정된 과거의 「도서관법」에서는 모든 공립공공도서관의 운영비를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에서 부담토록 되어 있었는데, 새로운 「도서관진흥법」에서는 공공도서관을 설립·운영하는 기관의 회계에서 그 운영비를 부담토록 한 점이다. 즉, 교육장이 설립·운영하는 공공도서관에 대하여는 시·군·구 교육청의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운영비를 부담할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에서는 운영비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도록, 과거의 법에 비해 「운영비 일반회계부담 원칙」이 오히려 후퇴한 것이다.

물론 과거의 도서관법에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부담이 명시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도서관이 교육청에서 운영비를 부담하였음은 사실이라 하더라도, 공공도서관 운영비는 원칙적으로 일반회계 부담이라는 국가의지는 나타나있었다.

그러나 새로운 법에서는 현실적인 제반 어려움에 이유로 들어 도서관 운영비 재원을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로 이원화함으로써 현행의 이원적 운영체제를 완전히 공식화시키게 된 것이다. 즉, 운영체제의 이원화가 바람직하여 장기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

운영으로 일원화할 방침이기는 하되, 당분간은 현재의 이원적 운영체제를 그대로 유지할 수 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이에따라 전국 223개의 국립공공도서관 중 184개관은 교육청이 운영주체가 되며, 문화부의 지도·감독효과가 실제로 가능한 도서관은 시·군·구청이 운영주체로 되어있는 39개관뿐인 셈이다. 문화부를 포함한 중앙부처의 모든 행정업무는 지방에 내려가서는 시·군·구청으로 모아지되, 교육행정만은 교육청의 채널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운영체제의 이원화란 모순을 해소시키지 못한 이유로서 정부당국은 재산이관 절차상의 문제, 이관되는 도서관 운영비의 문화부 부담문제, 직원의 소속 변경으로 인한 신분상의 변동문제 등을 제기하여 왔다.

그러나 이러한 난제를 해결코자 하는 노력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의 문제가 간과되었다고 본

다. 즉, 국가의 도서관정책을 새로운 부서에서 담당키로 되어 관련되는 법을 개정하거나 새로이 제정하는 입장에서, 국가조직의 산하 단위부처간에 야기되는 법규상의 장애는 당연히 함께 개정하거나 조정할 수 있어야 함은 당연한 논리이다. 근본적으로 어떤 새로운 목적이나 제도의 수행을 위해서는 관련되는 절차나 수단의 조정이 마땅히 전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문화부이관이라는 외형상의 성과는 얻되, 관련절차를 조정함으로써 생기는 갈등은 가급적 피하려는 편의주의적 사고의 결과라고 믿어진다.

한 부처에서 40여년간 수행해오던 행정을 타부처에 이관하는 과정에서, 우선 쉬운 일부터 처리하고 다음 단계에서 나머지 일을 처리하고자 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이해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이 시점에 서라도 이 문제는 분명히 지적된 후 앞으로의 개선 노력을 위해 정부당국은 물론 전체 도서관계가 관심을 집중시켜야 하리라 본다.

한국도서관협회 출판물안내

☐137-042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2동 산60-1

☎ (535) 4868 · 5616

성 명	저 자	발행연도	면 수	가 격
한국십진분류법 (본표·상관색인)	분류분과위원회편	1980	1,30	20,000원
한국 목록규칙 (3.1 판)	한국도서관협회	1990	101	4,000원 (반양장)
한국도서관통계 (1990 년 도 판)	한국도서관협회	1990	77	4,500원
도서관학·정보학 용 어 사 전	사공 철 등 편	1986	336	15,000원 (반양장)
한국학자료선정목록	한국도서관협회	1986	331	18,000원